

2025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일반트랙 1차 참여기업 모집공고(변경)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인증 획득을 지원하는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일반트랙 1차 참여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24일
중 소 벤 처 기 업 부 장 관

※ 본 공고는 「2025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일반트랙 1차 참여기업 모집공고」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133호, 2025. 2. 24.)에서 변경한 공고입니다.

< 변경 내용 >

구분	당초	변경
가점 삭제	K뷰티 크리에이터 챌린지 선정기업(2점)	K뷰티 크리에이터 챌린지 선정기업(2점) 삭제

< '25년 일반트랙 1차 공고내용(요약) >

구분	주요 내용	본문 위치 (링크)
지원대상 인증 (541종)	유럽CE·미국NRTL·중국NMPA·미국ASME 등 541종 인증 지원 ▶ 541종에 포함되지 않는 인증도 '비공고규격'으로 신청 가능 ▶ 기업은 패스트트랙과 일반트랙 교차신청 가능 (연간 지원한도 내에서 신청가능) ※ 패스트트랙 지원인증(8종)은 패스트트랙으로 신청 필요	p.2, 붙임 1
모집기간	▶ '25년 2월 24일(월) ~ 3월 28일(금)	p.3
지원내용	▶ 해외규격인증획득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의 50%~70% 지원	p.3
지원한도	▶ 패스트트랙-일반트랙 합산 기업당 최대 4건*, 1억원 * 단, 최대건수를 신청했음에도 (예상)협약금액 합이 3,500만원 미만일 경우, 3,500만원 한도 내에서 4건을 초과하여 건수 제한 없이 신청 가능	p.2~3, 붙임 2
지원대상	▶ 전년도 직접수출액 5,000만불 미만의 중소기업 * 단, 글로벌 강소기업 1000+ 지정기업은 5,000만불 이상도 지원 가능	p.2
신청방법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센터(www.smes.go.kr/globalcerti/)에서 신청서 작성 및 구비 서류 업로드 ※ 회원가입 → 로그인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 사업신청 → [패스트트랙/일반트랙] 구분 신청	p.3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관련 문의사항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수출인증지원센터 (☎ 02-2164-0173~8)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은 '패스트트랙(상시모집)'과
'일반트랙(연 3회 모집)'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년도부터 별도로 공고함

1. 사업 개요(일반트랙 1차)

- ☐ 목적 :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에 기여
- ☐ 모집규모 : 230개사 내외 * 모집 규모 변동 가능
- ☐ 지원기간 : 협약체결 후 1년(연장 필요 시 12개월 단위로 최대 2회 연장 가능)
- ☐ 지원대상 : 전년도 직접수출액 5,000만불 미만*의 중소기업
* 단, 글로벌 강소기업 1000+ 지정기업은 5,000만불 이상도 지원 가능

2. 지원내용 및 한도(일반트랙 1차)

- ☐ 지원내용 : 541개* 해외규격인증(【붙임 1】)획득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인증비, 시험비 및 컨설팅비 등 인증획득비용의 일부(50% ~ 70%) 지원

* 지원인증에 포함되지 않는 인증도 '비공고 규격인증'으로 신청 가능하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결정

** 아래 인증(8종)은 '패스트트랙'으로 신청하여야 함

<패스트트랙 지원대상 인증(8종)>

미국	FCC (전기전자)	FDA (의료기기 Class1)	FDA (화장품 등록)
유럽	CE (전기전자, 통신 및 기계분야)		CPNP (화장품)
국제	HALAL(식품, 화장품 등)		IECEE (전기전자)
일본	PSE (전기전자)		

단 위 인증에 해당하더라도 고비용이 소요되는 경우(건당 3,000만원 이상 소요), 일반트랙(고비용인증)으로 신청

- ☐ 지원한도 : 기업당 최대 4건, 1억원 한도 내 지원(일반-패스트트랙 합산)

지원건수	기업당 지원한도	지원비율(전년도 매출액 기준)			인증 분야별 개별한도
		100억원 미만	300억원 미만	300억원 이상	
최대 4건	연간 1억 원	70%	60%	50%	붙임 2 참조

* 최대건수(4건, 일반-패스트트랙 합산)를 신청했음에도 신청금액((예상)협약금액) 합이 3,500만원 미만일 경우, 3,500만원 한도 내에서 4건을 초과하여 지원건수 제한 없이 추가 신청 가능

- 인증을 획득한 참여기업의 실제 인증획득 소요 비용에 지원비율을 적용한 금액과 “일반트랙 인증분야별 정부지원금 인정/한도기준【붙임 2】” 금액을 비교하여 적은 금액을 지원

(1) 인증분야별 개별한도(붙임 2)는 기업당 지원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지원항목은 다음과 같음

- **인증비** : 인증서 발행비, 인증신청비, 연회비, 심사비, 법정대리인 선임비 등

- 심사비 : 인증절차상 필수로 실시하는 공장심사, 서류심사 등
- 법정대리인 선임비 : 인증(또는 등록) 절차상 필수적으로 현지 법정대리인(책임자)을 선임해야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

- **시험비** : 인증에서 규정한 시험규격에 의거 제품을 시험(TEST)한 비용

- **컨설팅비** : 등록된 컨설팅기관의 인증진행을 위한 기술 자문료, 서류 대행료 등

(2) 기업 선정은 신청 기업 수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예산을 배분하여 진행

3. 모집기간 및 방법(일반트랙 1차)

□ **모집기간** : '25년 2월 24일(월) 09:00 ~ 3월 28일(금) 18:00 까지

○ **대상인증** : 국가별 일반트랙 해외규격인증 지원대상 인증【붙임 1】

* 지원대상 인증에 포함되지 않는 인증도 '비공공 규격인증'으로 신청 가능하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

□ **신청방법** : 온라인으로 신청서 작성 및 구비 서류 업로드

※ 회원가입 → 로그인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 사업신청 → [패스트트랙/일반트랙 구분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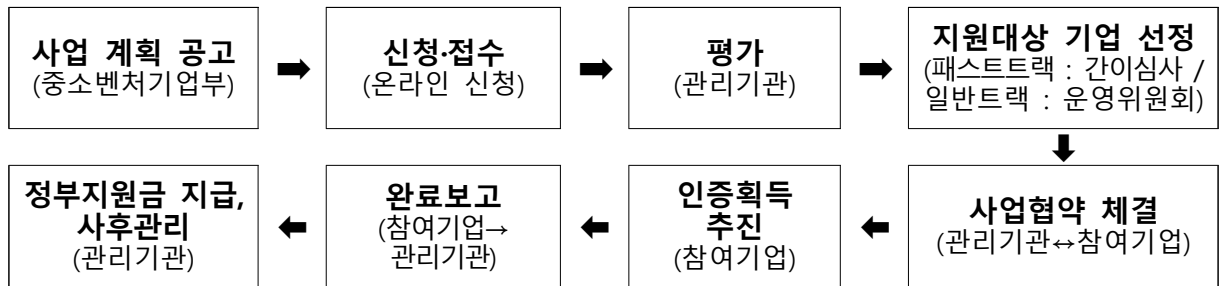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www.smes.go.kr/globalcerti/>)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 [사업신청] → [일반트랙] 메뉴에서 신청서 작성 후 등록

○ **【붙임 3】** 구비 서류는 신청 시 전산업로드(오프라인 제출 X)

* 파일형식 : PDF, JPG, PNG 등 스캔파일 및 HWP, DOC, EXCEL 등 문서파일

4. 평가 · 선정 및 지원 등 (일반트랙 1차)

< 추진절차 >



□ 평가 및 선정

- **평가기간** : 2025년 3월 31일(월) ~ 5월 9일(금)
 - * 평가 및 선정일정은 관리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 **평가방법** : 신청기업 평가표(붙임 4)에 따라 인증획득 필요성, 가능성, 의지, 해외시장 진출 역량 및 다변화 등 평가를 실시(서면평가)
 - 여성기업, 지방소재 기업 및 우수기업 등은 평가 시 가점부여

구분	가 점 항 목 (※각 구분요건에 해당시 구분별 1회 가점부여)	가점
1	여성 또는 지방소재 기업	1
2	소재·부품·장비기업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소부장 전문기업, 소부장 으뜸기업, 소부장경쟁력위원회 상생모델 지정기업	1
3	우수 중소기업 혁신제품 해외실증 지원사업 참여 기업, 해외인증 종합지원 우수기업 (산업부 해외인증지원단 추천기업 한정)	2

※ 신청기업 평가관련 유의사항

- 신청마감일 기준 유효한 서류만 인정함
-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사실관계 확인 등 필요시 관리기관이 신청기업 소재지(사무실 등)에 현장 방문할 수 있으며, 신청기업은 이에 협조해야 함
- 신청서류 검토 및 평가 중 지원제외 대상임이 발견되는 경우 해당기업의 신청을 반려함

- **선정방법** : 전문가 7인 내외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통해 지역별 경쟁 및 선정

* 지역별(본점 소재지 기준) 수요 및 선정 자격기준(65점) 등을 고려하여 선정

** 단, 고비용 인증(1건당 3천만원 이상 소요되는 인증)은 지역별 경쟁이 아닌 전국 경쟁으로 선정

□ 협약

- **협약** : 선정기업은 관리기관(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과 인증획득 협약을 체결하며, 협약기간 내 인증획득 성공 시 인증획득비를 지급함
 -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1년(연장 필요 시 12개월 단위로 최대 2회 연장 가능)

※ 지원기간 연장(일반트랙)

- 지원기간(과제수행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기업은 지원기간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기간 연장신청을 할 수 있음
- 일반트랙 지원기간 연장은 12개월 단위로 신청 가능하며, 최대 2회 신청 가능

- **정산** : 지원기간 내 인증획득완료 후 관리기관에 완료보고 시 정부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성공조건부 사후지원)
 - 참여기업은 단독으로 인증획득을 추진하거나 사업에 등록된 컨설팅기관을 활용할 수 있으며, 등록컨설팅 기관 이용시에만 컨설팅 비용을 지원함

※ 관리기관(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 등록된 컨설팅 기관 조회방법

(<https://www.smes.go.kr/globalcerti/> → 컨설팅기관 → 컨설팅기관 검색 메뉴 이용)

5. 신청 제외대상

※ 선정 이후에 신청제외 사유 적발 시 선정 대상에서 제외(협약완료시 협약취소)

- 휴·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 또는 기업
 - * 단, 사업신청 마감일 기준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완료자 또는 기업은 신청가능
-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자 또는 기업
 - * 단, 사업신청 마감일 기준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 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가능
- 동 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미완료 상태인 기업
 - * 진행 중인 트랙이 종료되어도 당해 연도 동일 트랙 재참여는 불가함
- 동 사업에 참여 제한조치를 받은 기업으로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 동 사업 또는 지자체 등 타 정부기관으로부터 동일한 제품(파생모델 포함)의 인증획득 비용을 지원(성실실패 정부지원금 포함) 받았거나 받고 있는 기업
 - * 단, 제품(모델), 신청품목, 인증명칭 등이 다른 경우 또는 사업 공고일로부터 과제 수행기간 내에 인증만료일이 도래한 인증갱신 건은 지원 가능(과제수행기간 내 1회에 한함)
- 직전 5개년('20년 ~ '24년 사업) 동 사업에 참여하여 지원받은 금액 합산액이 2억원 이상인 기업

6. 기타 유의 사항

- 인증획득 완료 후 실제 소요 비용의 일부(50% ~ 70%)를 정부지원금 한도(협약금액) 내에서 성공조건부로 사후 지급하는 사업임

※ 주의사항

컨설턴트나 컨설팅기관으로부터 기업의 부담이 전혀 없게 하겠다는 허위제안, 소요 비용페이백 등 부정한 제한이 있는 경우 관리기관으로 신고 바람.

허위 또는 부정한 제안에 가담하는 경우 관리기관(KTR)에서는 사업비 환수, 고발 등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임

- 사업 공고일 기준 이미 획득한 인증은 지원 불가함
- 이전년도 사업이 진행 중인 기업은 사업종료 후 신청이 가능하며, 당해 연도 사업에 한하여 패스트트랙과 일반트랙은 교차신청이 가능
- 컨설팅기관을 활용하여 사업에 참여할 경우 복수의 컨설팅기관에서 비교견적을 받아 가격, 컨설팅기관의 지원 실적 등을 감안하여 컨설팅기관을 선택할 것을 권장

* 컨설팅기관 결정 후에는 담당 컨설턴트가 명시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인증획득진행을 권장

- 컨설팅 없이 독자적으로 추진한 인증 또는 미등록 컨설팅기관*을 활용한 인증은 컨설팅비를 제외한 인증비, 시험비만을 지원

* 관리기관(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 등록된 컨설팅 기관이 아닌 컨설팅 기관

※ 관리기관(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 등록된 컨설팅 기관 조회방법

(<https://www.smes.go.kr/globalcerti/> → 컨설팅기관 → 컨설팅기관 검색 메뉴 이용)

- 신청금액(협약금액)은 “일반트랙 인증분야별 정부지원금 인정/한도 기준 (붙임 2)”에 따라 결정되며, 고비용인증의 경우 제출한 견적서를 근거로 매출규모 비율을 적용하여 협약금액을 결정함

* 단, 지원기업 선정 시 예산상황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협약금액을 조정하여 선정할 수 있으며, 정부지원금은 협약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음

☐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인증(분야)은 일반트랙으로 신청이 불가하며, 패스트트랙과 일반트랙 간 인증명칭 변경은 불가함

☐ 인증획득 완료 후 지원받은 제품에 대한 수출실적 성과확인을 위한 수출실적 제공 및 성과증명 요청에 응해야 하며, 미제출시 차후 동 사업 참여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사업 종료 후 지원성과 확인을 위한 제출방법 및 기간은 관리기관(KTR)에서 별도 공지

☐ ESG자가진단 보고서는 ESG 통합플랫폼*에 회원가입 후 ESG자가진단을 실시하여 사업 신청 시 필수 제출되어야 함

* ESG통합플랫폼(<https://kdoctor.kosmes.or.kr/esgplatform/main.do>)

☐ 「공공재정환수법」 시행(2020. 1. 1.)으로 부정청구 등*은 관련법에 따라 부당이익금(이자율 포함)의 환수 및 제재부가금(부당이익금의 최대 5배)이 부과·징수될 수 있으니, 타 사업과의 중복신청, 과다 청구 등에 유의하여 신청바람

* 동일한 내용의 인증획득 소요 비용을 여러 사업에 중복 청구하는 행위, 과다하게 비용을 부풀려 청구하는 행위 등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내용은 동 “사업 운영요령 및 과제수행 가이드(운영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사업신청 및 선정 후 요령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음

☐ 동 공고문 해석에 이의가 발생하는 경우, 공고기관(중소벤처기업부) 및 관리기관(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의 해석에 따름

7. 문의처

관리기관	전화번호	FAX	주 소
(재)한국화학융합 시험연구원 (수출인증사업단)	02)2164-0173~8	02)507-8118	(13810) 경기 과천시 교육원로 98, 본관동 303호(수출인증지원센터)

【붙임 1】

국가별 일반트랙 해외규격인증 지원대상 (541개)

국가별	규격인증		
미국	3-A (미국낙농 및 식품가공기기인증)	AAFA (미국천식알레르기 친화인증)	AAR (미국철도운송시설인증)
	ABS (미국선급인증)	ACMI AP (미국미술 및 창작재료인증)	AGA (미국가스설비인증)
	AHAM (미국가전제품인증)	AHRI (미국냉동공조기기인증)	AISC (미국강구조물인증)
	AMECA (미국자동차안전부품 인증)	ANSI (미국국가표준규격)	ANSI/ASHRAE (미국냉난방공조 표준규격)
	ANSI/BHMA (미국건축제품인증)	ANSI/BIFMA (미국사무 및 가구제품인증)	API (미국석유 및 가스산업인증)
	ASME (미국보일러 압력용기인증)	ASTM (미국재료 및 제품표준규격)	AWWA (미국수도협회품질인증)
	BPI (미국생분해성제품인증)	CA Proposition 65 (미국캘리포니아법령65)	CADR (미국청정공기공급률 인증)
	CARB (캘리포니아 공기청정장치인증)	CCS (미국콘텐츠클레임표준)	CEC (캘리포니아 에너지효율관리제도)
	CPL (미국속도측정장비적합 인증)	CPSIA (미국소비자제품 규격인증)	CRRC (미국에너지절감형 도료라벨인증)
	CTI (미국냉각탑열성능인증)	CWA (미국수자원보호인증)	DLC (북미에너지절감인증)
	DOE office of Energy Efficiency and Renewable Energy (미국DOE 에너지효율표준)	DOT (미국운수성인증)	ENERGY STAR® (미국에너지절약 소비자제품프로그램)
	Environments For Living Certified Green® (미국친환경녹색인증)	EPA (미국환경보호국인증)	EPEAT (미국전자제품환경평가)
	ETL (미국전기기기안전규격 인증)	ETL SANITATION (국제보건위생인증)	FCN (미국식품포장재 등록제도)
	FDA (미국식품의약국 허가·등록제도)	FDA-GRAS (미국식품안전물질등록)	FDA-NDI (미국신규건강기능식품 원료)

국가별	규격인증		
미국	FAA (미국항공기인증)	FedRAMP (미국클라우드보안 인증서비스)	FHWA (미국도로 안전시설물인증)
	Field Evaluation (미국현장설치승인평가)	FIPS (미국연방정보처리표준 인증)	Floor Score (미국바닥재실내공기질 인증)
	FMVSS (미연방자동차안전기준)	Fugitive Emission Test (미국밸브유해물질누설 인증)	Gluten Free (미국글루텐안전인증)
	Green Globes (미국그린글로브인증)	Green Seal (미국친환경인증)	Greenguard (미국실내공기질시험· 인증)
	GSA (미국연방조달청 제품등록)	Halogen Free (미국할로겐안전인증)	HERS (미국주택에너지효율 등급제도)
	HIRF (미국고강도전자기장)	HPD (미국친환경건축재료 유효성검증)	IAPMO (미국배관자재환경인증)
	ICC-700 National Green Building Standard®(NGBS Green) (미국친환경건축인증)	ICC-ES Evaluation Reports (미국건축자재관련제도)	ITE Compliance (북미신호등인증)
	MiamiDade NOA (미국건축자재인증 - 플로리다주)	MIL-STD (미군군사규격)	NB mark (미국압력용기 압력완화장치인증)
	NCHRP (미국고속도로관련시설물 연구프로그램)	NEBS (미국네트워크장비구축 시스템)	NFPA (미국소방설비인증)
	NFRC (미국창호단열규정)	NGV2 (미국고압연료탱크규격)	NIJ (미국방탄성능인증)
	NIOSH (미국산업안전보건제품 인증)	NMMA (미국요트트레일러인증)	NOP (미국유기제품인증)
	NPC (미국위생도기규격)	NRC (미국국가위원회 원자력부품수리인증)	NRTL (미국국가공인시험기관 인증)*
	* NRTL (미국국가공인시험기관인증) 지정기관 중 선택하여 신청 ※ NRTL인정 21개 기관(25.02.기준): BACL, BVCPS, CSA, DEKRA, Element, Euro fins E&E NA, FM, IAPMO, ITSNA, LTC, NNA, NSF, QAI, QPS, SGS NA, SPT L, SWRI, TUV Rheinland NA, TUV SUD America, TUV SUD PSG, UL		
	NTEP (미국측량프로그램)	NTPEP (미국교통제품평가 프로그램)	PTCRB (북미휴대폰인증)
	RECs (미국신재생에너지 증명서)	Responsible Recycling(R2) (미국재활용책임인증)	SCS (미국과학적 환경인증시스템)

국가별	규격인증		
미국	SRCC (미국태양열집열기인증)	U.S Food Equipment Certification (미국상업용 주방기기인증)	UL CAP (미국사이버보안평가 프로그램인증)
	UL ECV (미국환경성주장검증)	UPC (미국배관및기계인증)	USCG (미국해양안전관련규제)
	USDA Biopreferred program (미국농무부 바이오매스인증)	USDA Organic (미국농무부유기농인증)	Water Sense Label (미국물효율인증라벨)
	WH-ETL (북미건축자재마크)	WHI (북미지역건축자재인증)	WQA(Gold Seal) (미국수질협회 - 음용수제품품질인증)
유럽	AdBlue (유럽자동차매연 저감제인증)	BPR (유럽살생물제관리법)	BSI BS EN489 (유럽열(히트)파이프지침)
	CCA (유럽저전압전기장비인증 상호인정제도)	CCNR (유럽라인강항해 중앙위원회인증)	CE (유럽통합규격인증)
	CEN/TS 17342 (유럽오토바이도로 안전기술규격)	COSMOS (유럽유기농 및 천연화장품인증)	DEC (유럽디스플레이 에너지효율인증)
	EASA (유럽항공안전인증)	ECARF (유럽알러지제품인증)	ECB-S (유럽금고안전인증)
	ECO PASSPORT (유럽섬유제조공정인증)	Eco-Labeling (EU환경마크)	EFSA (유럽식품안전인증)
	EHEDG (유럽위생설계 및 디자인인증)	e-Mark (유럽차량용부품 안전인증)	EN 12469 (유럽미생물안전 캐비닛성능기준)
	EN 12727 (유럽고정의자의안전.강 도.내구성요구사항)	EN 14350 (유럽어린이 음용장비규정)	EN 15267 (유럽대기질 자동측정시스템평가인증)
	EN ISO 20471 (유럽반사색 안전조끼인증)	ENEC (유럽규격전기인증)	ESV (유럽위성통신인증)
	EU ORGANIC-EEC834/2007 (EU유기농식품인증)	EU-MED (유럽선박장비인증)	European Privacy Seal (유럽프라이버시씰인증)
	FIBC (유럽산업용 벌크포장재인증)	Green Dot (유럽포장재 폐기물관련인증)	M Classification (유럽공공건물내 섬유재료규제)
	Nordic Swan (유럽노르딕스완환경 인증)	Novel Food (유럽신규식품및식품 첨가제인증)	REACH (유럽화학물질등록제도)
	Regulation (EU) 10/2011 (유럽식품플라스틱인증)	Regulation EC No 1935/2004 (유럽식품접촉물질 규제지침)	Regulation EC No 79/2009 (유럽수소자동차 규제지침)

국가별	규격인증		
유럽	Seedling (유럽생분해인증제도)	SEMI (유럽반도체장비인증)	Solar Keymark (유럽태양열제품 적합성인증)
네덜란드	KEMA (네덜란드전기안전인증)	Kiwa Water Mark (네덜란드위생안전인증)	Mifare Security Certification (네덜란드반도체RF보안 인증)
	N-PTI (네덜란드 디젤자동차배출 미립자개수농도 측정기형식승인)		
덴마크	DEMKO (덴마크전기기기인증)	Drop Mark (덴마크음용수안전인증)	Ø-label (덴마크유기농인증)
독일	AD2000 (독일압력용기인증)	AGR (독일척추건강제품인증)	BDIH (독일유기농마크인증)
	BV-043 (독일해군장비규격)	DASSt-Guideline (독일철강건설제품인증)	Dermatest (독일피부저자극인증)
	DIN (독일표준규격)	DVGW (독일가스식음료인증)	GS (독일품질안전)
	IT-Grundschutz (독일정보보호인증제도)	KTW test certification (독일식수관련인증)	LFGB (독일식품용품법)
	LGA (독일바이에른 공업시험청품질인증)	LTF (독일항공기감항성시험)	MPA (독일건축자재인증)
	TUV (독일기술검사협회인증)	VDE (독일전기기술자 협회인증)	VdS (독일화재예방 및 보안시스템인증)
영국	ARL (영국알리지저감인증)	ASTA (영국안전규격)	BABT (영국통신기기승인)
	BBA (영국건자재인증)	BSI (영국표준규격)	CPA (영국상업용제품인증)
	EPC (영국에너지효율인증)	FIRAGOLD (영국가구품질인증)	I-LIDS (영국경찰 비디오분석인증)
	LR (영국선급인증)	SCPN (영국화장품등록)	UKCA (영국안전규격인증)
	WRAS (영국수도기자재인증)		

국가별	규격인증		
이탈리아	ACCREDIA (이탈리아전기제품인증)	IMQ (이탈리아전기제품인증)	RINA (이탈리아선급형식승인)
프랑스	ACS (프랑스보건위생 적합증명)	BV (프랑스선급인증)	CSTB (프랑스건축자재인증)
	DGCCRF (프랑스식품· 비식품시장감시제도)	ECOCERT (프랑스생산공장인증)	GTT (프랑스선급-GTT)
	NF (프랑스표준규격)		
벨기에	CEBEC (벨기에전기기기 안전인증)	Vincotte (벨기에환경인증)	
스페인	AEI Seal of Cybersecurity for Organizations (스페인사이버보호 인증제도)	AENOR (스페인규격인증)	National Security Framework (스페인국가보안 인증제도)
핀란드	FI Mark (핀란드안전인증)		
스웨덴	P mark (스웨덴규격인증)	S Mark (스웨덴전기기기 안전인증)	
노르웨이	DNV (노르웨이선급인증)	NEMKO (노르웨이전기기기인증)	NIPH (노르웨이 음용수관련인증)
	NORSOK (노르웨이표준해양규격)		
스위스	ESTI Safety Mark (스위스전기자동차 충전플러그인증)	Swissmedic (스위스의료기기등록)	
슬로 바키아	Health and safety act (슬로바키아 장비검증)		
벨라루스	BNOS (벨라루스유기농표준)		
일본	ASIA GAP (아시아식품관리제도)	BAA (일본자전거승인)	BOKEN (일본방적시험평가)
	CHAdemo (일본전기차 급속충전기인증)	CMJ mark (일본전기용품및부품)	F☆☆☆☆ (일본건축자재 포름알데히드인증)
	FESC (일본소방설비인증)	Japan Type Approval of Maritime Equipment (일본선박형식승인)	JAPEIC (일본용접관리 프로세스인증)

국가별	규격인증		
일본	JAS (일본유기제품인증)	JCII (일본식품포장용기인증)	JCMVP (일본암호모듈인증)
	JET PVM (일본태양광인증)	JFSA (일본식품위생법)	JIA (일본가스기기인증)
	JIS (일본표준규격)	JISEC (일본IT보안평가인증)	JPEX (일본방폭인증)
	JWWA (일본수도인증)	ClassNK (일본선급인증)	PMDA(JPAL) (일본의약품인증)
	Privacy Mark (프라이버시마크제도)	PSC (일본소비생활용품안전인증)	SIAA (일본항공제품인증)
	ST MARK (일본완구협회안전마크)	S-mark (일본안전인증)	VCCI (일본전자파장해인증)
	일본 ECO mark (일본친환경제품인증)	Building Materials Evaluation and Certification System (일본건축자재평가)	MLIT (일본국토교통성인증)
	일본무선통신인증 (JAPANMIC, JATE, TELEC)	JFRA (일본불연재료인증)	Steel Fabrication Plant Grading System (일본철골제작 공장인증)
러시아	EAC-MED (유라시아경제연합 의료기기인증)	Fire Protection Certificate (러시아소방안전증명서)	FSB (러시아암호화인증)
	GOST (러시아표준규격)	Pattern Approval Certificate (러시아계측기인증)	RS (러시아선급인증)
	RTN (러시아연방 위험산업시설인증)	SGR (유라시아위생등록)	Federal Agency for Air Transport of the Russian Federation (러시아항공조명인증)
	Quality control and sanitary safety of importing/exporting processed and unprocessed (수출·입수산물·수산 가공품의 품질관리 및 위생안전)		
말레이시아	BOMBA (말레이시아 소방방재인증)	DOSH (말레이시아 압력용기인증)	Malaysia MEPS (말레이시아에너지효율)
	MDA (말레이시아 의료기기등록)	MS 144 (말레이시아콘크리트 보강용강선규격)	NPRA (말레이시아 화장품의약품등록)

국가별	규격인증		
말레이시아	SIRIM (말레이시아 표준산업규격)		
멕시코	COFEPRIS (멕시코보건안전인증)	IFETEL (멕시코통신인증)	NOM (멕시코제품안전규격)
	SSA (멕시코보건부 - 위생등록)		
대만	BSMI (대만강제인증)	CNS (대만국가표준)	CR (대만선급)
	NCC (대만통신기기인증)	Taiwan Green mark (대만환경보호인증마크)	대만FDA (대만식품의약품 의료기기허가)
	VSCC (대만자동차및부품인증)		
태국	NBTC (태국통신인증)	Thailand Green Label (태국그린라벨)	TISI (태국공산품규격제도)
	태국FDA (태국식품의약품 의료기기허가)		
브라질	ABESE (브라질전자보안 제품인증제도)	ANATEL (브라질통신인증)	ANVISA (브라질식품의약품인증)
	BRAZIL NR (브라질산업안전 관리인증)	INMETRO (브라질강제인증)	PBE (브라질에너지라벨링제도)
	MAPA (브라질농약약품등록)		
사우디아라비아	CST (사우디아라비아통신인증)	SASO (사우디아라비아강제인증)	SFDA (사우디아라비아 식품의약품인증)
튀르키예	TSE (튀르키예강제인증)		
싱가포르	BCA Green Mark (싱가포르건축물 그린마크인증)	BS476-22 (싱가포르방화문테스트)	CPSR (싱가포르제품안전인증)
	Data Protection Trustmark (싱가포르데이터보호 표준 및 적합성인증)	HSA (싱가포르의료기기등록)	IMDA (싱가포르통신장비인증)
	MTCS (싱가포르클라우드보안 인증)	NITES (싱가포르NITES보안인증)	SFA (싱가포르식품시설등록)

국가별	규격인증		
싱가포르	SINGAPORE GREEN LABEL (싱가포르친환경 인증마크)	Singapore WELS (싱가포르물효율)	
아르헨티나	ANMAT (아르헨티나 의료기기인증)	INTI (아르헨티나 산업기술청인증)	IRAM (아르헨티나규격인증)
인도	ARAI (인도자동차 시스템부품인증)	BIS (인도제품인증)	CDSCO (인도화장품등록)
	CPRI (인도전기전력인증)	CRS (인도전자제품 강제등록제도)	DCGI (인도의약품허가제도)
	IBR (인도보일러규정)	IRS (인도선급인증)	MTCTE (인도통신장비보안규제)
	RDSO (인도철도인증)	STQC (인도생체인식장치인증)	TRA (인도및티벳지역 농자재인증)
	인도자동차부품인증 (CentralMotorVehicleRegulationApproval)		
인도네시아	BKI (인도네시아선급인증)	BPOM (인도네시아 식품의약품등록)	SNI (인도네시아국가규격)
	SDPPI (인도네시아 유무선 통신기기 인증)		
중국	CCC (중국강제인증)	CCIS (중국네트워크핵심설비 및 사이버보안전용제품 안전인증)	CCS (중국선급인증)
	CEL (중국에너지효율라벨)	CGAC (중국가스용품 품질감독관리)	China Environmental Labelling (중국환경표지인증)
	CMA (중국계량인증)	CPA (중국계측기형식승인)	CRCC (중국철도제품인증)
	CSEL (중국보일러 및 압력용기인증)	GACC (중국식품 해외제조자등록)	GB 18030 (중국어인코딩인증)
	GB TEST (중국국가표준규격시험)	HG/T 2888-2010 (중국고무장갑시험검사)	ICAMA (중국농약제품인증)
	LA mark (중국노동보호용품 마크인증)	MARA (중국반려동물사료인증)	MOH (중국수입식용수관련 안전제품위생허가)

국가별	규격인증		
중국	NAL (중국통신장비허가제도)	NIM (중국계량계측품질인증)	NMPA (중국국가식품약품감독 관리총국허가·등록제도)
	SAMR (중국보건식품허가등록)	SRRC (중국통신제품형식승인)	중국식품수화인등록 (입경화물검사검험증명)
	National Health Commiss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중국신식품원료허가)	MOA (중국 비료 허가)	Sanitary License for the Production of Disinfectants and Disinfection Equipment (중국 소독제 등록)
	Food Safety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중국 수입 첨가제 등록)	CHINA ORGANIC (중국 유기농 식품 인증)	중국자율제품인증 (CQC,CVC등)
	Former General Administration of Quality Supervision (중국미생물수입등록)		
카자 흐스탄	GOST-K (카자흐스탄인증)		
중동	GCC (중동적합성마크)		
캐나다	CAN/CGSB155.20 (캐나다방염원단인증)	CCMC (캐나다건축자재인증)	CCPSA (캐나다소비자제품안전법)
	CNF (캐나다화장품사전신고)	CRN (캐나다압력제품등록)	CSA (캐나다표준규격)
	CSA STAR (캐나다클라우드서비스 인증)	CWB (캐나다용접인증)	ISED (캐나다통신기기인증)
	MDEL/MDL (캐나다의료기기인증)	NRCAN-Energy Efficiency (캐나다에너지효율 관리제도)	TDG Regulations (캐나다위험물질운송인증)
쿠웨이트	KUCAS (쿠웨이트제품적합인증)		
페루	Registro sanitario (페루보건등록증)		
콜롬비아	ICONTEC (콜롬비아표준산업규격)	INVIMA (콜롬비아식품의약품인증)	RETIE (콜롬비아변압기 강제인증)
	RETIQ (콜롬비아에너지효율)		
폴란드	B mark (폴란드전기안전인증)	NTA (폴란드건축자재인증)	PPP (폴란드농약약품등록)

국가별	규격인증		
에티오피아	ECEA (에티오피아 판매인증서)		
필리핀	ERC (필리핀배전시스템 규격인증)	ETV-Philippines (필리핀환경기술검증)	ICC (필리핀표준규격인증)
	NTC (필리핀통신인증)	PEFC (필리핀산림제품인증)	PFDA (필리핀식품의약품 의료기기인증)
라오스	MPT (라오스무선통신 형식승인)		
베트남	CR Mark (베트남안전규격인증)	DAV (베트남보건부의약품 화장품등록)	DMEC (베트남의료기기 수입허가)
	VNEEP (베트남에너지효율인증)	VNTA (베트남유무선통신인증)	PPD (베트남 비료허가)
	VFA (베트남 식품 인허가)		
호주	ABA Seedling (호주생분해인증제도)	ACRS (호주신뢰성인증)	ADR (호주자동차안전 및 배기량규격)
	AFRDI (호주사무가구품질인증)	AGA (호주가스안전인증)	AISEP (호주정보보안 평가프로그램)
	APEC CBPR (호주APEC개인정보보호 인증)	APVMA (호주농약동물용 의약품등록)	AS (호주표준규격)
	ASI (호주알루미늄생산공정 환경인증)	ASD (호주ASD암호화 평가인증)	Code Mark (호주건축법규위원회 건축자재인증)
	PS (호주개인보호장비)	RCM (호주전기전자 강제인증규격)	SAI GLOBAL (호주제품품질인증)
	TGA (호주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인증)	Water Mark (호주배관제품인증)	WELS (호주물효율라벨링제도)
홍콩	Green Label (홍콩그린라벨)	HKSM (홍콩제품안전마크)	OFCA (홍콩이동통신인증)
이라크	COSQC (이라크표준)		
남아프리카 공화국	ICASA (남아프리카공화국 통신제품인증)	NRCS (남아프리카공화국 강제규제)	SABS (남아프리카공화국 표준규격인증)

국가별	규격인증		
이란	CRA (이란무선통신기기인증)	ISIRI (이란강제인증)	MOH (이란화장품의약품인증)
나이지리아	SONCAP (나이지리아강제인증)		
아랍 에미레이트	Dubai Civil Defence (두바이화재예방제품승인)	ECAS (아랍에미레이트안전인증)	EQM (아랍에미레이트 제품적합성마크)
	TRA (아랍에미레이트 유무선통신인증)		
이스라엘	IAI (이스라엘항공우주인증)	SII (이스라엘표준규격인증)	
우크라이나	Ukr SEPRO (우크라이나제품인증)		
모로코	DMP (모로코화장품사전등록)		
칠레	SEC (칠레전기안전 및 에너지효율인증)		
미얀마	MPU (미얀마 신용카드단말기인증)	미얀마FDA (미얀마식품,의약품, 의료기기허가)	
이집트	CAPA (이집트의료기기등록)	EDA (이집트식약청화장품등록)	
뉴질랜드	BIOGRO (뉴질랜드유기농인증)	BRANZ (뉴질랜드건축자재인증)	ECNZ (뉴질랜드환경라벨)
	New Zealand WELS (뉴질랜드물효율)	ACVM (뉴질랜드농약약품등록)	
바레인	Energy Efficiency Rating Labels (바레인에너지효율라벨)		
캄보디아	ISC (캄보디아안전표준)	DDF (캄보디아 화장품 등록)	
코트 디부아르	CI-VoC (코트디부아르 수출적합인증서)		
우즈 베키스탄	GOST-UZ (우즈베키스탄적합성인증)		

국가별	규격인증		
국제	AEC-Q (자동차용전자부품 품질인증)	AEM (장비제조협회인증)	ALE 1.0 (RFID제품인증)
	AMCA (국제공조시스템인증)	ASC (지속가능 수산물(양식)인증)	ATP (부패성음식의 수송적합승인)
	Bluetooth (블루투스제품인증)	BQB (블루투스제품간 호환성확보목적인증)	BRC IOP (국제식품포장재표준인증)
	BRCFOOD (식품안전글로벌규격)	Bluesign System Partnership (섬유화학유해물질인증)	BREEAM (친환경건축물평가제도)
	Carbon neutral certification (탄소중립인증)	CC (정보기술보안평가)	Chip card approval (스마트카드사승인)
	CMMI Lv3~Lv5 (국제소프트웨어및정보기술 품질인증)	Conforming Golf balls (국제골프제품안전인증)	COSPAS-SARSAT (조난경보기 및 위치정보제품인증)
	Cradle to Cradle (제품가치사슬인증)	DLMS-COSEM (계량장비 프로토콜시험인증)	EAC (유라시아 적합성인증, 구 CU 인증)
	Ecovadis (지속가능경영인증)	EFfCI (유럽화장품 원료품질인증)	EHP003 (국제열파이프안전인증)
	EMV (국제IC카드보안인증)	EN 16258 (운송온실가스배출표준)	EtherCAT Compliance test (이더넷적합성테스트)
	E-Stewards (전자제품재활용표준)	Fair Trade (국제공정무역마크)	FIDO (생체인증)
	FIFA Quality Mark (FIFA품질인증)	FSC (산림관리인증)	FTC (화염시험인증)
	G7Master (국제인쇄표준)	GLOBAL G.A.P (국제우수농수산물인증)	GOTS (유기농섬유규격)
	Green-e® Energy (청정에너지인증)	GRS (국제재생표준인증)	GRSB (지속가능소고기인증)
	HDMI (PC.디스플레이· 인터페이스표준규격)	Higg Index (의류산업환경부담지수)	HSNO APPROVAL (유해물질 및 신규생물관련인증)
	IAAF (국제육상경기연맹인증)	ICAO (국제민간항공기구 국제표준)	ICSA Labs (IT보안제품성능인증)
	IEC 61850 (변전자동화인증시험)	IECEX (국제방폭인증)	IFCC HbA1c (당화혈색소 측정검출기기인증)
	IFOAM (세계유기농업운동연맹 유기농인증)	ILO-Better work (국제노동인권인증)	International EPD (국제환경성제품선언)

국가별	규격인증		
국제	Intertek Green leaf mark (인터텍그린리프마크)	IPA (클린룸인증)	ISCC (바이오매스 및 에너지인증)
	ISEGA (유럽식품접촉안전성인증)	ISO 11119-3 (가스실린더설계및시험)	ISO 12500 (압축공기용필터국제표준)
	ISO 14064 (온실가스배출, 감축, 검증제도)	ISO 21434 (자동차사이버보안)	ISO 22899 (해양제트화재발생위험 안전인증)
	ISO 26262 (자동차기능안전성 국제표준)	ISO 3834 (국제용접품질인증)	ISO 7096 (토공건설기계운전자 관련 진동규격)
	ITF Ball Approval (국제테니스연맹 테니스볼승인)	ITF Classified Court pace (국제테니스연맹 테니스코트제품인증)	IWA 14-1 (국제차량보안안전인증)
	KOSHER (유대교식품적합인증)	LEED (녹색건물인증제도)	LPCB (보안및화재예방인증)
	MPR2 (전자파측정및검사규격)	MSC-CoC (지속가능수산물인증)	NADCAP (국제항공기 자동차부품인증)
	NON GMO (유전자변형농산물 미사용인증)	OCPP 1.6 (전기차충전기규약)	OCS (유기농섬유인증)
	OIML (국제법정계량기인증)	OEKO-TEX® Standard 100 (국제친환경섬유인증)	OK Biobased (국제바이오제품인증)
	OK Biodegradable Certification (국제생분해성 친환경인증)	OK compost (생분해성인증)	OpenADR (전력수요관리인증)
	PCI (신용카드단말기 보안국제규격)	Product carbon footprint label (탄소발자국제품라벨)	Profibus (국제공장자동화기기인증)
	QI (무선충전표준인증)	R&A Certificate (골프용품인증)	Rainforest Alliance (열대우림보호인증)
	RCS (재활용원료포함제품인증)	REPULPABLE AND RECYCLING CERTIFICATION (종이및펄프재활용인증)	RoHS (유해물질사용제한지침)
	RSB (바이오기반원료, 연료인증)	RSPO (국제친환경팜유인증)	RTRS (지속가능콩재배인증)
	RWS (친환경올생산물산지인증)	SG-Mark (소비자제품안전인증)	SIL (국제안전레벨등급인증)
	SMETA (윤리적공급망인증)	SQF (식품품질안전)	STANAG (NATO군사장비 표준화협정)

국가별	규격인증		
국제	TCO05 (정보사무기기효율인증)	The Skin Cancer Foundation's Seal of Recommendation (피부유해자외선차단 검증인증)	TISAX (자동차정보보안평가)
	Toxproof (환경유해물질안전마크)	UCI (국제사이클연합인증)	UN38.3 (리튬배터리 운송안전성시험)
	USB-IF (USB 개발자포럼인증)	Water Footprint Network (물발자국네트워크)	WHO (세계보건기구살충제인증)
	Wi-Fi Certified (Wi-Fi상호운용성인증)	WPS (용접절차인증)	WT-Recognition (세계태권도연맹 공인인증)
	Z-Wave Product Certification (전자제품상호호환성인증)	ZDHC MRSL(Lv 1이상) (유해물질배출규제)	신용카드 단말기 보안인증 (VISA,AMEX,MASTER등)

※ 위 지원대상 이외의 해외규격인증은 [사업 가이드(운영지침) 별첨 1-4호]를 작성하여 “비 공고 규격인증”으로 신청가능하며,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결정

【붙임 2】

일반트랙 인증분야별 정부지원금 인정/한도 기준

(○ : 인정 / 단위 : 천원)

해당 국가	지원 규격명	제품분야	세분류	인증획득비용 인정여부(인정한도)			정부지원금 한도액			분야 코드
				인증	시험	컨설팅 인정비용	100억원 미만	300억원 미만	300억원 이상	
유럽	CE/ UKCA	의료기기 (MDR)	Class I	○	○	6,300	10,600	9,100	7,600	DoC-CEME1
			Class II (Class I s, I m, I r 포함)	○	○	12,000	21,000	18,000	15,000	CoC-CEME2
			Class III	○	○	18,000	21,000	18,000	15,000	CoC-CEME3
			법정대리인 선임비용 인정한도(기업당)	(2,500)	-	-	-	-	-	-
		체외 진단기기 (IVDR)	Class A	○	○	6,300	10,600	9,100	7,600	DoC-CEIV1
			Class B, C (Class A sterile 포함)	○	○	12,000	21,000	18,000	15,000	CoC-CEIV2
			Class D	○	○	18,000	21,000	18,000	15,000	CoC-CEIV3
			법정대리인 선임비용 인정한도(기업당)	(2,500)	-	-	-	-	-	-
		방폭기기 (ATEX)	-	○	○	5,000	21,000	18,000	15,000	CoC-CEEX
		압력용기 (PED)	-	○	○	1,500	7,000	6,000	5,000	CoC-CEPED
		건설자재 (CPR)	EC지침 System 4에 해당하는 경우	○	○	1,200	5,800	5,000	4,200	DoC-CECPR1
			EC지침 System 4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	5,000	13,000	11,200	9,300	CoC-CECPR2
		완구 (TOY)	-	○	○	600	2,900	2,500	2,100	DoC-CETOY
		기타제품군	EC지침에 따라 인증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	○	600	3,900	3,400	2,800	DoC-CEETC1
			EC지침에 따라 인증서를 발행해야 하는 경우	○	○	2,800	9,100	7,800	6,500	CoC-CEETC2
	UKCA	전자기기	전자파, 전기안전, 무선통신 중 1개 시험	○ ⁽¹⁾	○	600	2,200	1,900	1,600	DoC-UKEL1
			전자파, 전기안전, 무선통신 중 2개 시험	○ ⁽¹⁾	○	600	4,400	3,800	3,200	DoC-UKEL2
			무선통신, 전자파, 전기안전 모두 시험	○ ⁽¹⁾	○	2,200	8,200	7,100	5,900	DoC-UKEL3
		기계류	부칙 2, Part4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	○	1,100	3,900	3,400	2,800	DoC-UKMC1
			부칙 2, Part4에 포함되는 경우	○	○	2,200	5,400	4,700	3,900	CoC-UKMC2
	CE/ UKCA	RoHS 시험을 신규로 진행하는 경우		-	○	-	2,100	1,800	1,500	R(추가코드)
		광생물학적 시험을 추가로 진행해야하는 경우		-	○	-	1,100	1,000	800	B(추가코드)
	SCPN	화장품	-	○	○	500	2,100	1,800	1,500	DoC-SCPN
			법정대리인 선임시 (기업당)	(2,600)	-	-	1,800	1,600	1,300	RP1 (추가코드)
	e-mark	자동차관련 부품	-	○	○	2,800	7,800	6,700	5,600	CoC-EMR

해당 국가	지원 규격명	제품분야	세분류	인증획득비용 인정여부(인정한도)			정부지원금 한도액			분야 코드
				인증	시험	컨설팅 인정비용	100억원 미만	300억원 미만	300억원 이상	
중국	NMPA	의료기기	CLASS I	-	○	10,000	11,200	9,600	8,000	DoC-NPME1
			CLASS II	○	○	30,000	21,000	18,000	15,000	CoC-NPME2
			CLASS III	○	○	30,000	21,000	18,000	15,000	CoC-NPME3
			법정대리인 선임비용 인정한도(기업당)	(5,000)	-	-	-	-	-	-
		화장품	비특수 제품 등록	-	○	1,800	3,700	3,200	2,700	DoC-NPCS1
			영·유아 제품 등록	-	○	3,000	7,500	6,500	5,400	DoC-NPCS2
			특수 제품 허가	-	○	3,000	7,600	6,600	5,500	CoC-NPCS3
			자외선 시험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	-	○	-	5,600	4,800	4,000	U (추가코드)
			미백 시험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	-	○	-	13,400	11,400	9,500	W (추가코드)
			보습 시험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	-	○	-	2,100	1,800	1,500	M (추가코드)
			1 개 시험하는 경우 (보습 제외)	-	○	-	7,000	6,000	5,000	E1 (추가코드)
			2 개 이상을 시험하는 경우 (보습 제외)	-	○	-	14,000	12,000	10,000	E2 (추가코드)
			법정대리인 선임비용 인정한도(건당)	(800)	-	-	-	-	-	-
			안전성평가보고서 인정한도(건당)	-	(800)	-	-	-	-	-
	CCC	공산품, 전기전자 등	중국강제인증	○	○	3,000	8,400	7,200	6,000	CoC-CCC
	중국지율 제품안전 인증	공산품	-	○	○	3,000	7,000	6,000	5,000	CoC-CVC
	GB Test	기타제품군	GB Test 별도로 요구되는 경우에 한함	-	○	600	1,400	1,200	1,000	DoC-GBT
	중국식품 수화인 등록	식품	입경화물 검사검증증명 라벨링	-	○	1,500	1,100	1,000	800	DoC-SRFD1
미국	FDA	의료기기 ⁽²⁾	510(k) (시판 전 신고)	○	○	12,000	21,000	18,000	15,000	CoC-FDME2
			PMA (시판 전 승인)	○	○	12,000	21,000	18,000	15,000	CoC-FDME3
			Establishment Registration (의료기기 Class1)	○	-	600	9,300	8,000	6,600	ME1 (추가코드)
		(감액지원)	Establishment Registration (의료기기 Class1)	○	-	300	4,650	4,000	3,300	ME1-D (추가코드)
		일반의약품 (OTC)	OTC Facility Fee (일반의약품 시설등록)	○	-	1,000	22,800	19,600	16,300	DoC-FDOTC
		기타제품군 ⁽³⁾	등록 또는 검사	-	○	1,000	1,500	1,300	1,100	DoC-FDETC
		법정대리인 선임시(기업당)		(1,000)	-	-	700	600	500	RP2 (추가코드)

해당 국가	지원 규격명	제품분야	세분류	인증획득비용 인정여부(인정한도)			정부지원금 한도액			분야 코드	
				인증	시험	컨설팅 인정비용	100억원 미만	300억원 미만	300억원 이상		
	FDA- NDI	식품	건강기능식품 신규물질등록	○	○	7,000	21,000	18,000	15,000	CoC-NDI	
	FDA- GRAS	식품	식품첨가제 신규물질등록	○	○	7,000	21,000	18,000	15,000	CoC-GRAS	
	NRTL	공산품	부품 또는 제품 등 기기	○	○	1,000	12,600	10,800	9,000	CoC-NRTL1	
		원자재	플라스틱, 전자재 등 원재료	○	○	800	9,900	8,500	7,100	CoC-NRTL2	
	ASME	압력용기/ 보일러 등	U, S, PP 등 Stamp 등록비용	○	-	2,000	4,200	3,600	3,000	CoC-ASME	
			AIA, Team Service 등 기타 비용을 포함하는 경우	○	○	3,000	16,800	14,400	12,000	A (추가코드)	
			비파괴검사 비용 인정한도(기업당)	-	(1,500)	-	-	-	-	-	
독일	Derma- test	화장품	-	○	○	1,000	2,600	2,200	1,800	CoC-Derma	
일본	일본무선 통신인증	무선기기	무선 설비의 공사 설계 인증, 무선단말기의 설계 인증 등	○	○	1,300	7,000	6,000	5,000	CoC-JAMC	
국제	REACH ⁽⁴⁾	공산품	SVHC 및 후보물질 비사용 증명용 시험	-	○	600	2,100	1,800	1,500	DoC-RCH1	
		화학물질	본 등록	○	○	5,000	16,700	14,400	12,000	CoC-RCH2	
	RoHS ⁽⁵⁾	RoHS 인증이 별도로 요구되는 경우에 한함		○	○	600	2,100	1,800	1,500	DoC-ROHS	
	IECEX	방폭제품	-	○	○	5,000	21,000	18,000	15,000	CoC-IECX	
	화장품 허가	화장품	동남아시아 화장품허가 (태국, 베트남, 필리핀 등)	○	○	400	700	600	500	CoC-COS	
			법정대리인 선임비용 인정한도(건당)	(300)	-	-	-	-	-	-	
	선급	Inspection Certificate(검사)		○	○	600	2,500	2,200	1,800	CoC-SHIP1	
		Type Approval(형식 승인)		○	○	1,200	8,700	7,600	6,300	CoC-SHIP2	
		Approval of Manufacturer(공장승인)		○	○	1,200	5,600	4,800	4,000	CoC-SHIP3	
	WPS	용접	용접절차 인증	○	○	600	3,200	2,800	2,300	CoC-WPS	
	SQF	식품	-	○	-	2,800	9,800	8,400	7,000	CoC-SQF	
	기타 (상기 한도기준이 지정된 인증 이외의 인증)	인증서 미발행			○	○	1,000	4,600	4,000	3,300	DoC-ETC1
		인증서 발행			○	○	2,800	9,800	8,400	7,000	CoC-ETC2
법정대리인 선임이 필수로 요구되는 경우 인정한도 (기업당)			(1,000)	-	-	-	-	-	-		
고비용인증 ⁽⁶⁾				○	○	7,000	100,000			H (추가코드)	

- (1) 인증기관이 지정되지 않은 저전압전기안전지침(LVD)의 인증서 발행비는 인증비용으로 인정 불가
(2) 일반트랙에서는 FDA 의료기기 Class2(510k) 등급 이상인 제품의 심사비용 및 시험비용 등을

지원하며, 의료기기 시설 및 제품등록(Establishment Registration) 필요시 추가코드 선택

* '22년 이후 시설 및 제품등록(Establishment Registration) 지원 이력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재지원은 불가함. (단, 신규제품 추가 등록인 경우에 한하여 감액지원)

(3) 의료기기, OTC, 화장품 분야를 제외한 제품 시험 지원

(4) REACH : REACH는 각 국의 신화학 물질 관리제도(EU/UK REACH, CHINA REACH, TSCA, KKDIK)를 포함하여 지원

(5) RoHS : EU RoHS, 일본J-MOSS, 중국RoHS, ELV(폐자동차처리지침) 등 국제환경규제에 대비한 유해물질분석을 지원(단, 동일제품은 1회에 한하여 지원)

※ 고비용인증으로 협약체결 하였으나, 인증획득완료 후 일반인증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패스트트랙 또는 일반트랙의 인증분야별 인정/한도 기준을 따름

※ 컨설팅인정비용은 정해진 분야코드를 따르되 분야코드 추가의 경우 더 높은 비용을 따름
(단, ASME인증의 경우 AIA 등 비용이 포함되는 경우 추가코드 A의 인정비용을 따름)

※ 인증제도 절차상 제품에 따라 CoC와 DoC로 구분되는 인증의 경우, DoC인증분야로 한도가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CoC인증분야의 기타인증으로 신청가능

※ 추가코드는 인증획득 시 필수로 요구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분야코드에 정부지원금 한도액을 합산하여 지원하는 분야임

※ 컨설팅인정비용은 지원금액이 아닌 인정가능한 컨설팅비용 한도이며, 인증·시험·컨설팅 비용을 합산하여 인정된 금액에서 50% ~ 70%비율로 지원됨

※ 동일한 시험규격, 내용으로 중복 발행된 시험성적서(보고서 등 포함) 비용은 제외될 수 있음

【붙임 3】

2025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일반트랙 신청기업 구비 서류

□ 필수 제출서류 : 신청기업 모두 전산 업로드

- 사업신청서 1부 (온라인 작성) 및 신용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1부 (온라인 작성)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1부 (온라인 작성)
- 전전년도 및 전년도(당해 연도 포함) 직접수출액 확인서 (Tmydata 플랫폼을 통한 자동 확인, 제출생략)
- 전전년도 및 전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 1부 (원클릭시스템을 통한 자동 확인, 제출생략)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원클릭시스템을 통한 자동 확인, 제출생략)
- 중소기업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통한 사전발급, 제출생략)
- 고비용인증 신청의 경우 : 시험·인증기관의 견적서(청구서) 또는 계약서 1부 (해당 시 전산 필수 업로드)
- ESG자가진단 보고서 1부(ESG통합플랫폼에서 작성 후 전산업로드)

(<https://kdoctor.kosmes.or.kr/esgplatform/main.do>)

□ 선택 제출서류 : 해당되는 경우만 전산 업로드

구분	평가항목	제출서류 (해당기업에 한함)
인증획득 필요성, 가능성, 의지	시험·인증기관 접수증/견적서	○ 시험·인증기관 접수증 또는 견적서 등 * 인증 요청 대상 제품에 한함
	해외규격인증 획득노력	○ 제출생략
해외시장 진출 역량 및 다변화	매출액 증감률	○ 제출생략(튼튼한내수기업 포함)
	수출증가율	○ 관세청(무역통계진흥원) 직접수출액(확정) 조회 기준 - [일반트랙] 제출생략 단, 관세청 미집계(무체물, 간접수출) 수출실적을 제출하고자 하는 기업은 별도의 수출증명서 제출 필요 * "무체물(소프트웨어, 전자서적, 음향물 등)" 수출실적을 보유한 경우 한국무역협회에서 발급한 용역/전자적 무체물 수출입증명서 별도 제출 ** "간접수출실적" 을 보유한 경우 UtradeHUB(한국무역통산)에서 발급한 간접수출증명서 별도 제출 필요 ※ 수출실적 조회기간은 1월 ~ 12월까지 이며, 전전년도, 전년도 증명서 모두 제출 필요
	수출실적 증가	
	수출국증가, 신시장진출	
	원산지인증수출자 획득기업	
	수출준비 활동	
가점	글로벌강소기업 1000+ 지정기업	○ 제출생략
	가점사항	○ 제출생략

【붙임 4】

2025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일반트랙 1차 신청기업 평가표

평가항목	평가구분	배점	평가방법	점수																
인증획득 필요성 가능성 의지 (50점)	시험·인증기관 접수증/견적서	30점	• 인증획득 예정 신청건별 견적서(또는 접수증) * 시험기관 또는 인증기관의 견적서만 인정됨 - 모두 제출 (30점), 50% 이상 제출 (25점), 50% 미만 제출 (20점), 미제출 (10점)																	
	해외규격인증 획득 노력	20점	•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주관 온·오프라인 교육 이수 이력(전년도 및 당해 연도) - 심화교육 1회 또는 일반교육 3회(10점), 일반교육 2회(7점), 일반교육 1회(4점), 이수이력 없음(2점)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전담대응반 전문심층상담* 참여이력(전년도 및 당해 연도) - 오프라인 상담회 참여(10점), 온라인 상담 참여(7점), 참여이력 없음(4점) * 전담대응반 전문심층상담 온라인 상담 / 오프라인 상담회 참여																	
해외시장 진출 역량 및 다변화 (50점)	매출액 증감률		10점	• 매출액 증감 실적(전전년도 대비 전년도) - 30% 이상(10점), 10% 이상(8점), 0% 이상(6점), 감소(4점) * 초기창업기업(창업 3년 이내)의 경우 국제성 홈텍스에서 매출액이 조회되지 않거나 감소한 경우 6점부여 특정한내수기업(수출바우처사업) 선정 기업은 매출액 증감률 점수 10점 만점 부여																
	수출 다변화 가능성 (20점)	수출 증감률	5점	• 수출 증감률(전전년도 대비 전년도) <table border="1"><thead><tr><th>구분</th><th colspan="4">전년도 수출 증감률</th></tr><tr><th>분포구간(%)</th><th>0이하</th><th>40이하</th><th>100이하</th><th>100초과</th></tr></thead><tbody><tr><td>점수</td><td>2</td><td>3</td><td>4</td><td>5</td></tr></tbody></table> * 내수기업(전년도 직·간접수출액 0불)의 경우 3점부여	구분	전년도 수출 증감률				분포구간(%)	0이하	40이하	100이하	100초과	점수	2	3	4	5	
		구분	전년도 수출 증감률																	
		분포구간(%)	0이하	40이하	100이하	100초과														
		점수	2	3	4	5														
	수출실적 증감	5점	• 수출액 증감 실적(전전년도 대비 전년도) - 60만불 이상(5점), 10만불 이상(4점), 0불 이상(3점), 감소(2점) * 내수기업(전년도 직·간접수출액 0불)의 경우 3점부여																	
	수출국 증가 (직접수출 한정)	5점	• 전전년도 대비 전년도(당해 연도 포함) 수출국가수 증가 실적 - 3개국 이상(5점), 2개국 이상(4점), 1개국 이상(3점), 증가 없음(2점) * 전년도 직접수출액 0불의 경우 3점부여																	
신시장 진출 (직접수출 한정)	5점	• 신규 수출국 진출 여부(전전년도 및 전년도 수출실적 없는 국가 대상 인증 신청 여부) - 2개국 이상(5점), 1개국(4점), 신규수출국 인증 없음(3점) * EU인증 신청시 가점 1점부여 (다만, EU 내 수출실적이 있을 경우, 신규 수출국은 0개국으로 계산) ** 국제인증 신청시 가점 1점부여(내수기업에 한함)																		
수출준비활동 (20점)			•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홈페이지(외국어) 보유, 외국어 카탈로그, 제품 홍보 동영상 보유, 해외전시회 참여 이력 - 상기 항목 중 4개 이상(20점), 3개(16점), 2개(12점), 1개(8점), 미준비(6점) * 수출관련 교육(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주관교육 제외) 이수 이력(전년도 및 당해 연도)이 있을 경우 가점 2점부여 글로벌강소기업 1000+ 지정기업의 경우 수출의지 점수 20점 만점 부여																	
총 계		100점																		
가점(4점)	4점	구분	가 점 항 목 (※각 구분요건에 해당시 구분별 1회 가점부여)	가점																
		1	여성 또는 지방소재 기업	1																
		2	소재·부품·장비기업 :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소부장 전문기업, 소부장 으뜸기업, 소부장경쟁력위원회 상생모델 지정기업	1																
		3	우수 중소기업 : 혁신제품 해외실증 지원사업 참여 기업, 해외인증 종합지원 우수기업(산업부 해외인증지원단 추천기업 한정),	2																
* 본점이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한 기업																				